



#### 4. 제안경위

- 2005. 10. 5 : 「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입안 제안
- 2005. 12. 1 : 「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변경입안 제안
- 2005. 12.15 : 「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입안결정 통보
- 2005. 12.21 : 열람공고 (2개사 신문공고)
- 2006. 1.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#### 5. 제안근거

-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(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) 고성군계획조례 제7조 (주민의견 청취)에 의한 고성군의회 의견제시

#### 6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이 지구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 하였음.
-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611번지 일원으로 계획면적이 98,900㎡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30,000㎡ 이상에 해당되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업용지, 공공시설용지, 녹지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항만 해안에 접하고 있음.
-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입지조건은 양호하다고 사료되지만 개발 계획에 의한 공장이 입주되며 주변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에 착안하여 심도있는 심사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.

#### 7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도면상으로 바다를 몇평정도 매립이 들어갑니까 ?
- 답 : 해면 47,770㎡인데 현 단계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.

○ 문 : 엑스포 및 관광도 중요하지만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하자가 없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답 : 예

8. 토 론 : 없음

9. 심사결과

○ 2006. 1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